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하는 「법원조직법」(법률 제 17125호, 2021. 2. 9.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윤리감사관실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독립한 기관으로 개편되는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각급 기관 및 각급 기관장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포함함(안 제1조, 제3조제1항)
-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행정예고를 게시할 홈페이지를 법원행정처와 같이 법원 홈페이지로 함(안 제3조제2항)

4.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형위원회 다음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제3조제1항 중 양형위원회 위원장 다음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각각 추가하고, 제3조제2항 중 “법원행정처는”을 “법원행정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p> <p>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u>양형위원회</u>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p> <p>-----</p> <p>-----</p> <p>-----</p> <p>-----<u>양형위원회, 대법원 윤리감사관</u>-----</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3조 (행정예고의 방법)</p> <p>①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u>양형위원회 위원장</u> 및 각급 법원장(이하 "각급 기관장"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6조</p>	<p>제3조 (행정예고의 방법)</p> <p>①-----</p> <p>-----</p> <p>-----<u>양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윤리감사관</u>-----</p> <p>-----</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예고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법원행정처는 법원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 -----.</p> <p>②----- --(법원행정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 -----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230